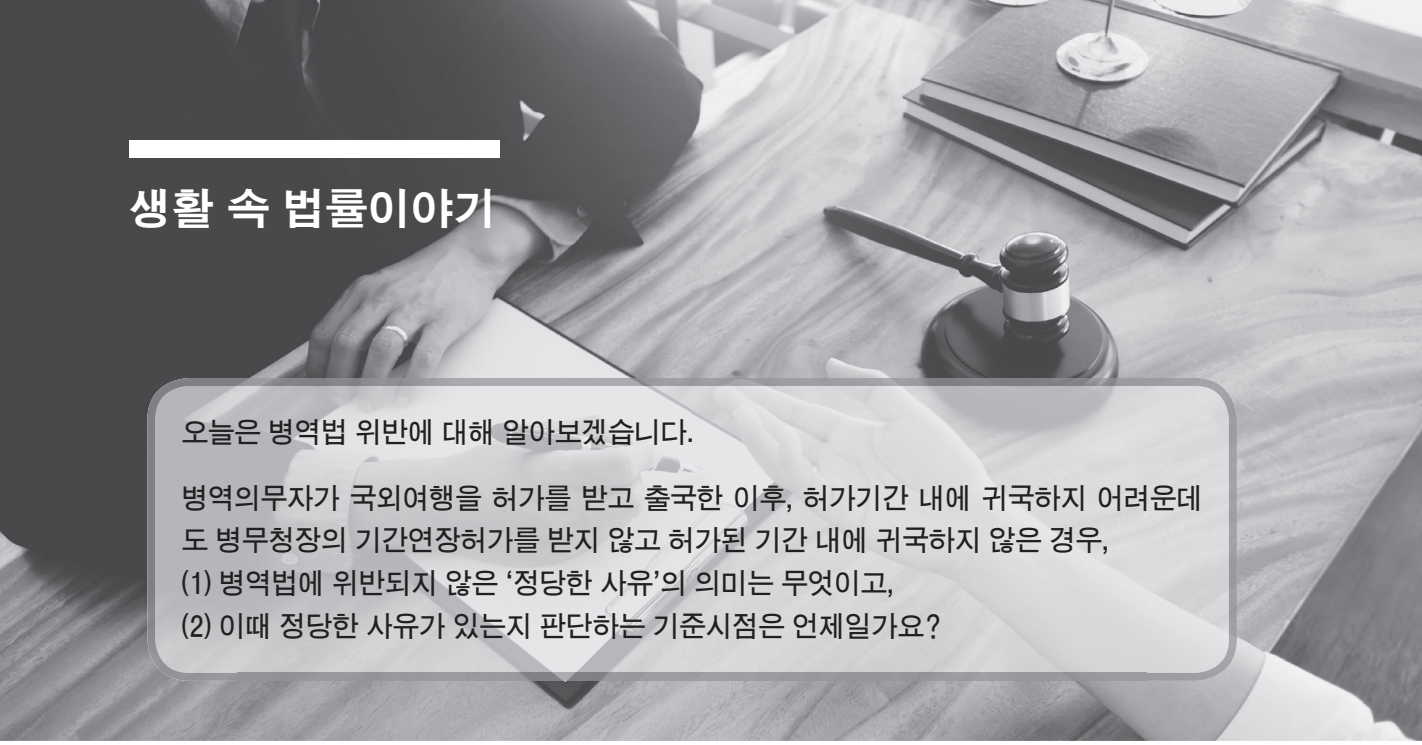

생활 속 법률이야기

오늘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허가를 받고 출국한 이후,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어려운데도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1) 병역법에 위반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무엇이고,
(2)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언제일가요?

해외 여행 중이던 A는 2006년 1월 20일 목과 허리 통증에 대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장은 A의 목과 허리 통증이 "귀국하기 곤란할 정도의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통보를 했습니다.

2006년 2월 27일에 비로소 영주권을 취득한 A는 다시 연장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병역법 제70조 제3항에서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기간연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70조 제3항
>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병역법 제94조 제2항에서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94조 제2항
>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두가지 조항을 종합하여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
>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데도 병무청 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인 구 병역법 제94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에 관하여 판례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6년 2월 27일 비로소 영주권을 취득하여 다시 연장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은 연장허가의 기간 만료일인 2005년 12월 31일이 지난 다음에 새로이 생긴 사정으로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A는 구 병역법 제94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는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정단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률이야기)